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2026. 8. 27.

하나고등학교

(www.hana.hs.kr)

2027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모집 인원 (남녀 8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비 고
정원 내	일반전형	160명(남 80명, 여 80명)	
	사회통합전형	40명(남 20명, 여 20명)	모집 정원의 20%
	소 계(A)	200명(남 100명, 여 100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6명	모집 정원의 3% 이내
	고입특례대상자전형	4명	모집 정원의 2% 이내
	소 계(B)	10명	
총 모집인원(A+B)		210명	

1) 지원자는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2) 사회통합전형은 모집 정원의 20%(40명)를 의무적으로 선발함 (일반전형과 동시 선발함)
   -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 정원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소수점 이하 버림)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함
   - 원서접수 종료 후 즉시 사회통합전형 지원 미달 인원을 반영한 일반전형의 최종 선발 가능 인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사회통합전형 중 '다문화가족 자녀', '군인 자녀'는 전국모집임. 그 외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모집임)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함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학생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 ~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추가전형」도 동일함**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재입학(1학년 신입학)이 제한됨

5) 사회통합전형 중 '다문화가족 자녀', '군인자녀'는 국내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및 졸업 예정자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table>
<tr><th colspan="4">전형 구분</th><th>유형별 지원 자격</th></tr>
<tr><td rowspan="20">정원내</td><td colspan="3">일반전형</td><td>공통자격을 갖춘 자</td></tr>
<tr><td rowspan="19">사회통합전형</td><td rowspan="7">기회균등전형</td><td>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td><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td></tr>
<tr><td>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td><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td></tr>
<tr><td>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td><td>「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td></tr>
<tr><td>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td><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td></tr>
<tr><td>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td><td>「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td></tr>
<tr><td>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td><td>「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 대상자'일 경우 보훈자 자녀 "정원 외"로 지원</td></tr>
<tr><td>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해당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에 한함)</td><td>■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포함(동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또는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제출, 추천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첨부 (단, 추천위원회 의견서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학교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기 위해 학생학부모 개인 식별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보안에 철저히 유의하여 심의</td></tr>
<tr><td colspan="4">사회다양성전형의 모든 대상자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공통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td></tr>
<tr><td rowspan="12">사회다양성전형</td><td rowspan="8">1순위</td><td>다문화가족 자녀</td><td>「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td></tr>
<tr><td>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td><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td></tr>
<tr><td>특수교육대상자</td><td>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td></tr>
<tr><td>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td><td>「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td></tr>
<tr><td>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td><td>「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td></tr>
<tr><td>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td><td>「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td></tr>
<tr><td>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td><td>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td></tr>
<tr><td>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td><td>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td></tr>
<tr><td rowspan="4">2순위</td><td>한부모가족 자녀</td><td>「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td></tr>
<tr><td>군인 자녀</td><td>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td></tr>
<tr><td>경찰(해양경찰) 자녀</td><td>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td></tr>
<tr><td>소방공무원의 자녀</td><td>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td></tr>
<tr><td colspan="2">환경미화원 자녀</td><td>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td></tr>
<tr><td rowspan="2">정원외</td><td colspan="3">보훈자녀전형</td><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td></tr>
<tr><td colspan="3">고입특례대상자전형</td><td>○「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자격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되어 통보된 자</td></tr>
</table>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기회균등전형』

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자격)**'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구분)**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학생이 '교육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 기회균등전형이 아닌 **보훈자 자녀 '정원 외'로 지원**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

기회균등전형 중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의 범위

'학생 본인'이나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4~5쪽 [참고] 양식 참조)

※ 관할 보훈지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학생 본인'이나 '학생의 부 또는 모'를 **확인대상자로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

보훈대상자	근거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회의록 제출 필요)**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

아래 선정 요건 등을 고려하되, 대상 학생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수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 및 추천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학교가 판단함**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동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또는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증빙 서류 예시】

- ▪실업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단,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추천위원회' 심사 후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 및 첨부하여 제출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다.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 사항

202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이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7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2. 사회통합전형 중『사회다양성전형』

가. '공통' 필수 요건

2026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19쪽 참고자료1 참고)

[2026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수 외 소득월액(건강)포함 금액]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2인	181,659	243,833	247,763	982,560
3인	264,935	309,777	318,043	1,428,000
4인	338,641	374,300	390,974	1,864,080
5인	435,046	457,613	490,306	2,271,840
6인	525,833	535,512	584,741	2,655,600
7인	579,249	584,741	634,423	3,024,000
8인	628,429	634,423	712,921	3,392,160
9인	697,282	712,921	838,330	3,760,560
10인	697,282	712,921	838,330	4,128,960

*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금액 합산) ※ (원칙)재산세(주택)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2 확인) - '임의계속가입자' 여부는 '(공통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직장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6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금액 및 재산세(주택) 과세 금액 합산)

※ 유의사항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관련

- 부·모의 **'최근 1년 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기간 포함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을 합산 ※ 부와 모 각각 제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의미
- 직장 및 혼합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에 '소득월액(건강)'을 포함한 '고지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고지금액 및 **연말정산금액(분할) 납부청구액은 합산하지 않음**
-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 (발급방법) 재직 중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 유의사항 2.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관련

- **(개념)**재산세(주택)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7, 9월분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 **(발급방법)**가까운 주민센터 및 구청(세무민원부서) 직접 방문 발급(온라인 발급 불가) ※ 부와 모 각각 제출
- **(사례1)**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1부 제출):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주택)기준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전국단위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사례2)**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① 재산세(주택)가 부과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② 서울 내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자치구 기준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③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기준으로 해당 세목(재산세 주택)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나. 다문화가족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부 또는 모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40% 이내**로 제한함

3.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복 실시함

[1단계]	⇨	[2단계]	⇨	[3단계 (필요시)]	⇨	[4단계]
중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지원 심사원서 제출		중학교 추천위원회 심사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중학교 학교장 확인서 발급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고등학교에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고등학교 1단계 전형		고등학교 2단계 전형

※ **[1, 2단계] 학교추천위원회 심사원서 제출 대상은 기회균등전형 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에 한함**

※ **[3단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전형'에만 해당됨**

※ **[4단계]** 학교장 확인서 발급 대상은 '모든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함'. [1~3단계]를 거치지 않는 기회균등전형 내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제외한 지원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등)은 중학교에서 학교별 내부 절차에 따라 증빙 서류를 확인한 후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함. 그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학부모 및 지원자 동의 시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될 수 있음

4.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함

3 제출 서류

가. 1차 제출 서류 (지원자 전원)

1) 제출 시기 : 2026. 12. 3.(목)~ 12. 7.(월) (업무시간: 토·일 제외 09:00~17:00)

*단 12월 7일(월) 09:00~15:00

2) 제출 서류

<table>
<tr><th colspan="3">대상</th><th colspan="3">유형별 제출 서류</th></tr>
<tr><td colspan="3">모든 지원자 (공통)</td><td colspan="3">o 입학원서 2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o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2부
- 단면으로 출력하여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작성) 기준일: 2026.11.13.(금)
- 학교생활기록부Ⅱ(상급학교제출용) 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일반고 입시용(1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제외)' 탭을 선택하여 다음 유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유의 사항
- 수상경력(3번 항목)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6번 항목)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상황(6번 항목) 내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중 영재교육원 기록사항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6번 항목) 내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의 3학년 부분 제외
- 1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제외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 항목)의 3학년 부분 제외
※ 출결상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은 마감(작성) 기준일까지의 내용만을 반영하여 출력(마감 기준일 다음 날부터 출결 등 추가 입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단,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 2부, 성적증명서 2부 제출(합격증서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o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o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학적서류 제출
단,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교(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면제</td></tr>
<tr><td colspan="3">일반전형</td><td colspan="3">o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td></tr>
<tr><td rowspan="7">사회통합전형</td><td>공통</td><td colspan="3">o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o 2027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확인서 1부[붙임2]
o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 자녀(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한부모가족</td></tr>
<tr><td rowspan="6">기회균등전형</td><td>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td><td colspan="2">o 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1부</td></tr>
<tr><td rowspan="5">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td><td>차상위 자활근로자</td><td>o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1부</td></tr>
<tr><td>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td><td>o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1부</td></tr>
<tr><td>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td><td>o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1부</td></tr>
<tr><td>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td><td>o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1부</td></tr>
<tr><td>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td><td>o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1부</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대상</th><th colspan="2">유형별 제출 서류</th></tr>
<tr><td rowspan="8">사회통합전형</td><td rowspan="7">사회다양성전형</td><td colspan="2">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td><td>o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1부</td></tr>
<tr><td colspan="2">기준중위소득 50%이하</td><td>o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구청,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1부</td></tr>
<tr><td colspan="2">기준중위소득 60%이하</td><td>o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학교) 1부
※ [확인서 발급사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임을 확인]
➡ 해당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제출)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자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추천(NEIS에서 확인 가능)
※ 학교 행정실에 '교육비 담당부서' 문의 후 수기 발급 요청
➡ 학교장 직인 날인 포함</td></tr>
<tr><td colspan="2">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td><td>o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할 보훈지청, 정부24(홈페이지)) 1부</td></tr>
<tr><td colspan="2">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해당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에 한함)</td><td>o [붙임3]학교장 추천서 1부
o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1부
o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o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각 1부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학교장 추천서」또는「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주택)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o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의견서도 포함</td></tr>
<tr><td rowspan="3">공통</td><td>지역건강보험 가입자</td><td>o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기간: 최근 1개년 이상 포함
o (공통)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o (공통)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6개월 평균 고지금액 포함)</td></tr>
<tr><td>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td><td>o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기간: 최근 1개년 이상 포함
o (공통)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o (공통)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6개월 평균 고지금액 포함)
o (공통)재산세(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관련 서류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1부 제출):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주택)기준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기재된 전국단위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각 1부씩 총 3부 제출):
① 재산세(주택)가 부과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② 서울 내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자치구 기준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③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기준으로 해당 세목(재산세 주택)에 대해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서울이 아닌 나머지 시·도에 주택을 소유하여 지방세 재산세(주택) 분이 과세된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각 1부씩 총 3부 제출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 19쪽 참고4 표와 17~19쪽 예시 서식을 확인 후 서류 제출</td></tr>
<tr><td>1순위</td><td>다문화가족 자녀</td><td>o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부 또는 모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지원 자격 미인정
o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o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중 택 1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국내거소신고증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대신하여 제출 가능)</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대상</th><th colspan="2">유형별 제출 서류</th></tr>
<tr><td rowspan="10"></td><td rowspan="10"></td><td rowspan="7"></td><td>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td><td>o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1부</td></tr>
<tr><td>특수교육대상자</td><td>o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결과통지서 사본 1부
- (원칙) 상기 서류는 <u>별도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음</u>
- (예외) ‘건강장애’, ‘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를 수반하는 중도중복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재선정 절차를 거치므로 ‘당해연도 발급’ 서류로 제출</td></tr>
<tr><td>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td><td>o 졸업(예정)증명서 1부</td></tr>
<tr><td>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td><td>o 사실 관계 확인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td></tr>
<tr><td>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td><td>o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부모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참고</td></tr>
<tr><td>순직
군경・소방관・교원
・공무원 자녀</td><td>o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td></tr>
<tr><td>다자녀가족
(3자녀 이상) 자녀</td><td>o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제출(건강보험료 관련 공통적용 기준 서류도 다른 사회다양성전형과 동일하게 포함)
- 6쪽 및 7쪽 공통 서류 참조</td></tr>
<tr><td rowspan="5">2순위</td><td>한부모가족 자녀</td><td>o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td></tr>
<tr><td>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td><td>o 재직증명서 1부</td></tr>
<tr><td>군인 자녀(중령 이하)</td><td rowspan="3">o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증빙 대상자가 원서접수 기간 동안 지원 대상 계급(예: 중령, 경감, 소방경 이하)자격을 충족해야 함</td></tr>
<tr><td>경찰(해양경찰)
자녀(경감 이하)</td></tr>
<tr><td>소방공무원
자녀(소방경 이하)</td></tr>
<tr><td colspan="2">보훈자자녀
전형</td><td colspan="2">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1부</td></tr>
<tr><td colspan="2">고입특례
대상자전형</td><td colspan="2">o 2027학년도 고등학교 특례 입학 대상자 확인서 1부[붙임4]
o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2부
o 출국 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해당자만 제출) 2부</td></tr>
</table>

※ 복지로(보건복지부 운영 복지 포털 사이트) : www.bokjiro.go.kr, 정부24 : www.gov.kr

※ 자세한 민원 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은「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 계획」참조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2026. 11. 3.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모든 제출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고, 필요시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해야 함(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나. 2차 제출 서류 (2단계 면접대상자만 제출)

대상	제출시기	제출 서류
2단계 면접 대상자 (공통)	2026.12.10.(목) 17:00 ~ 12.14.(월) 10:00 (오전 10시)	o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및 저장) -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하며 마감 시간 이후 입력 및 수정 불가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또는 감점 처리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인증시험, 각종 대회 참여 사실, 성적, 수상 실적 -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 출간 사실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실적 및 관련 내용* *다만, 특례입학 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 포함 가능(대회 참여·수상실적은 제외)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위의 배제 사항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유사도 검증시스템으로 검증 예정)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가.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온라인 입력 시험 운영		2026. 11. 27.(금) 09:00 ~ 12. 2.(수) 24: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o 원서를 입력하여 저장 가능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전형료 결제)		2026. 12. 3.(목) 00:00 ~ 12. 7.(월) 13: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o 전형료 30,000원 결제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o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확인
1차 서류 제출 (지원자 전원)		2026. 12. 3.(목) ~ 12. 7.(월) (업무 시간: 09:00 ~ 17:00, 토·일 제외) 12. 7.(월) **오후 3시 마감**	본교	o 업무시간에 본교 방문 **(단 우편 접수시 2026. 12. 7.(월) 15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는 12. 4.(금)까지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 요망** o 입학원서, 각종 확인서 등에 학교장 직인을 날인 후 제출 o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제출
1단계 합격자 (2단계 면접 대상자) 발표		2026. 12. 10.(목) 17:00	본교 홈페이지	
2차 서류 제출 (2단계 면접 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2026. 12. 10.(목) 17:00 ~ 12. 14.(월) 10:00(오전10시)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o 온라인 제출 o 마감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불가
2단계 면접 및 체력 검사		2026. 12. 21.(월) ~ 12. 22.(화)	본교	o 시간 및 장소 추후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2. 30.(수)	본교 홈페이지	
입학 신고 및 예비 소집		2027. 1. 9.(토)	본교	
신체검사		2027. 1. 11.(월) ~ 1. 15.(금)	본교 지정 병원	
추가 모집	원서 접수	2027. 1. 11.(월) ~ 1. 12.(화) (업무 시간: 10:00 ~ 15:00)	본교 방문 제출	o 추가모집은 정원 미달 시에만 실시 o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면접 전형일	2027. 1. 14.(목)		
	합격자 발표	2027. 1. 15.(금)	본교 홈페이지	o 추가모집 합격자는 별도 지정 기간에 신체검사 실시
등록금 납부 기간		2027. 1. 20.(수) ~ 1. 22.(금)	추후 안내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1단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다른 학교 지원 불가)
- **전형료 결제 이후 타 학교(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지원(전형료 결제)시 이중지원으로 불합격 처리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작성) 기준일은 2026. 11. 13.(금)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면접 일정은 면접 대상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 일정은 본교 지정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본교 홈페이지(www.hana.hs.kr) 접속
② 팝업창 또는 입학 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③ 원서 접수 사이트 회원 가입 (지원자 본인 명의로 가입)
④ 입학원서 예비 입력 및 저장 시작
⑤ 입학원서 입력 및 전형료 결제
⑥ 입학원서, 수험표, 접수증 등 출력물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직인 받음
⑦ 입학원서, 기타 유형별 제출 서류를 본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단, 우편 접수는 2026. 12. 7.(월) 15시 도착분에 한함)
⑧ 2단계 면접 대상자로 선발(1단계 합격) 여부 확인 (2026. 12. 10.(목) 17:00~)

※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므로 실제 입학원서 교부 절차는 없음

※ 전형에 관계없이 지정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접수 후 또는 서류 제출 후에도 불합격 처리함
단,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중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함. 그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학부모 및 지원자 동의 시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될 수 있음

2)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전형료 결제

- **기간 : 2026. 12. 3.(목) 00:00 ~ 12. 7.(월) 13:00**
- 전형료 : 입학원서 입력 시 전형료 30,000원을 온라인 결제하여야 함(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단, 2차 면접 대상자가 아닐 경우 2차 전형료 20,000원 중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예정임

3) 1차 서류 제출(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 **기간 : 2026. 12. 3.(목) ~ 12. 7.(월) (업무 시간 09:00~17:00, 토·일 제외)**
단, 2026. 12. 7.(월) 오후 3시 마감
- **제출 서류 : 원서 및 기타 구비 서류('자기소개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제출 장소 :** 본교 입학접수처 (본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4) 2차 서류 제출 (2단계 면접 대상자가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 **기간 : 2026. 12. 10.(목) 17:00 ~ 12. 14.(월) 10:00(오전 10시)**
- **제출 방법: 본교 홈페이지(www.hana.hs.kr) 팝업창 또는 입학 안내에 링크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및 제출**

※ 입력 기간 중 지원자가 마지막으로 저장한 자기소개서가 입력 마감 시각에 자동 제출됨. 이후 입력 및 수정 불가

※ 2단계 면접 대상자가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선발 방법

구분	1단계		2단계			총점
	교과 성적	출결	서류	면접	체력검사	
점수	40	감점	20	40	감점	100

나.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1) 교과 성적

o 교과 성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를 반영하며, 학기별 반영 비율을 고려함

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반영 비율	20%	20%	30%	30%

o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과목별 가중치를 고려함

과목	국어	사회/역사	수학	과학	영어
가중치	2	1	2	1	2

o 사회/역사 과목의 성취도를 입력할 때, 사회와 역사 중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를 입력하고, 사회와 역사를 모두 이수한 학기에는 '역사' 성취도는 입력하지 않고 '사회' 성취도만 입력함

o 교과 성적은 각 과목별 성취도에 대한 환산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함(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성취도를 입력)

성취도	A	B	C	D	E
환산 점수	40	30	20	10	0

o 해당 학기별로 위 반영 과목 중 성취도가 부여된 과목의 성취도(A, B, C, D, E)를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함. 이때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성취도는 '없음'을 입력함

o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과목별 성취도는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함

원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성취도	A	B	C	D	E

o 외국에서 수학한 자의 경우 국내 중학교 2, 3학년 교과 성적이 한 학기라도 있으면 국내 중학교 성적만 반영하며, 국내 중학교 2, 3학년 교과 성적이 모두 없으면 지원자가 제출한 외국학교 성적증명서의 성적을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평가함

2) 출결 상황

o 출결 감점 = 미인정결석일수 × 0.1점

o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중 3회를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함

o 출결 점수 산출의 기준은 2026. 11. 13.(금)까지의 중학교 재학 기간을 원칙으로 함

o 부양의무자 중 1인과 동반한 '정당한 해외출국(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등)' 학생에 대하여 미인정유학기간의 결석 처리로 인한 출결 감점 등의 불이익이 없음. 단, 중학교의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3) 서류평가

o 평가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o 평가 영역 및 배점

평가 영역	자기주도학습 영역	인성 영역	총점
배점	15	5	20

o 평가 방법 : 종합적인 평가

4) 면접평가

o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 영역	자기주도학습 영역	인성 영역	총점
배점	30	10	40

o 평가 방법 : 종합적인 평가

5) 체력검사

o 종목별 남·여 이수 기준

종목	남자	여자	제한 시간
교차 윗몸일으키기	17회	10회	40초
오래달리기 및 걷기	1,500m 완주	1,200m 완주	10분

o 평가 방법

- 두 종목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단계 배점(60점)의 10%를 감점함. 단, 중복 감점 없음
-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은 진단서를 체력검사 실시 전에 제출해야 하며, 감점 적용 여부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함

※ 진단서 필수 기재 항목: 병명, 발병일, 진단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계획(체력검사 종목 수행이 어려운 기간과 구체적인 사유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진단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제5기 상급종합병원 또는 교육부 고시 사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1,5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함

2)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및 저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 표절이 확인될 경우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3) 다음 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0점 처리**함

-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교과목의 점수·석차,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 및 수상 실적, 교내·외 인증시험·각종 대회 성적 및 수상 실적 등

※ 단, '참여 사실'만 기재 시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함

4) 다음 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해당 **영역별 배점의 10% 감점 처리**함

- 논문 투고 또는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어학연수·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1.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 도서출간 사실
7.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다만,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경험 포함 가능(대회참여·수상실적은 제외)

9.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0.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1.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12.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3.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4.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15.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이 출신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가. 공통기준

1) 전형 구분 없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방법은 동일함
2) 1단계 점수(교과 성적의 환산 점수 및 출결 점수)를 기준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를 선발하며, 1단계 점수 동점자는 모두 2단계 대상자로 선발함
3) 최종 합격자 동점 처리 기준: 2단계 총점 > 면접 총점 > 서류 총점 > 면접 시 인성 점수 > 1단계 총점 > 3학년 2학기 국어·영어·수학 성취도의 환산 점수 합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함
   ※ 이후 동점자 발생 시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4) 정원 내 학생 선발 시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주소지 기준)은 모집정원의 20%(40명) 이내로 제한함

나. 사회통합전형

1)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사회통합전형의 모집정원에서 지원자가 미달하는 경우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소수점 이하 버림) 이내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함**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24명)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은 지원 자격 참조

2) 기회균등전형 선발 시 각 성별로 정원의 60%를 우선 선발함. 단, 한 성별에서 미충원 시 다른 성별에서 선발하여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가 되도록 함
3)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4) 다자녀가족(3인 이상)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40%(16명) 이내로 함
5)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함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중으로 지원한 자

다.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자

8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 2026. 12. 30.(수) 본교 홈페이지

나. 합격자 예비소집 : 2027. 1. 9.(토) (추후 변경 가능)

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7. 1. 20.(수) ~ 1. 22.(금)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등 지원

가. 교육비 지원

1) 2027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2027년에 시행되는 「2027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교육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3) 참고: 「2026학년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안내

○ 학비 지원 : 법정 저소득 자격 유무 등 지원 자격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구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기타자격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연 731,000원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2021학년도부터 단계별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도 「2027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지원 기준에 따름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항목 및 자격

지원 항목(4종)	지원 자격	
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② 수련활동비 ③ 앨범비 ④ 기숙사비	법정저소득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항목별 지원 단가

지원 항목	단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600,000원 이내 실비
2. 수련활동비	1인당 250,000원 이내 실비
3. 앨범비(3학년)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4. 기숙사비(기숙사 입사생)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교육비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은 학기 중 법정 저소득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영 역	프 로 그 램
학업 능력 향상	서포트 수업 및 멘토링 활동, 독서기반 탐구 프로젝트
비교과 활동 강화	하나드리머스,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
학교생활 적응 제고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심리·진로 검사 실시, 사제동행 프로그램, 온캠프
진로 및 진학지도 강화	맞춤형 진로지도 실시, 맞춤형 진학 컨설팅

※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은 2026학년도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 장학금 지원

1) 본교는 지자체 및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외에도 서울시와 학교법인에서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므로 장학금 지원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음

2) 학교법인 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예산 등의 이유로 매년 장학금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3) 자격별 지원 항목

- '가'항(교육비 지원)의 지원금과 서울시 및 학교법인 장학금 지원을 총괄하면 아래 표와 같음
- 학교법인 장학금은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가'항(교육비 지원)에서 일부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부분을 아래 기준에 따라 학교법인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함
- [참고] 전년도 지원 항목 및 자격

<table>
<tr><th colspan="2">지원 항목</th><th>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th><th>소득·재산심사 결과,
중위소득 60% 이하</th><th>소득·재산심사 결과,
중위소득 100% 이하</th></tr>
<tr><td rowspan="2">학비</td><td>입학금, 수업료</td><td>전액 지원</td><td>전액 지원</td><td>일부 지원</td></tr>
<tr><td>학교운영지원비</td><td>전액 지원</td><td>연 731,000원 이내 지원</td><td>일부 지원</td></tr>
<tr><td rowspan="4">수익자
부담경비</td><td>기숙사비</td><td>전액 지원</td><td>전액 지원</td><td>일부 지원</td></tr>
<tr><td>급식비</td><td colspan="2">전액 지원(간식비 본인 부담)</td><td>-</td></tr>
<tr><td>방과후수업료</td><td colspan="2">자유수강권(연간 8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초과 시 일부 추가 장학금 지원</td><td>일부 지원</td></tr>
<tr><td>기타</td><td colspan="2">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앨범비 전액 지원
그 외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일부 지원</td><td>-</td></tr>
</table>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 시행 2025.5.15.)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7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이중지원 금지**

-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중학교에 재취학한 경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활용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함. 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하는 자료를 활용함(근거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라. 2단계 면접 대상자가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마. 2단계 면접 대상자는 면접 당일 입실 완료 시간 전에 지정된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완료 시간 이후 도착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바. 면접 당일 지원자는 교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을 착용하며 학교 배지 등으로 본인의 출신학교를 드러내서는 안 됨. 사복 착용 시 경제적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형관리위원은 학교에서 준비한 가운이나 조끼 등을 착용하도록 할 수 있음

사. 면접 당일 지원자는 통신, 촬영, 녹음, 녹화, 재생 장치 등 일체의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교 진행 요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아. 면접 당일 본교 진행 요원 또는 면접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퇴실 시간 전에 허가 없이 퇴실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를 하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함

자. 면접 응시자는 면접 후 입학전형영향평가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차. 제출한 기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될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카. 지원자는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업로드하여야 함

타.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

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하. 본교 입학생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신체검사 결과 기숙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입학관련 문의>
(우)033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35 (진관동)
홈페이지 : www.hana.hs.kr/
대표전화 ☎ 02) 6913-1160,
FAX 02) 6913-1785

참고 자료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고지금액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하지 않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6개월간 실제 고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중간에 휴직한 경우: **중간휴직 이후 일부 고지된 달이 있다면** 해당 개월 수와 중간휴직 전 고지된 개월 수를 합하여 6개월 분으로 산정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기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사례는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관련 Q&A' 참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안내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91조의4,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원자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출결사항, 지원 유형에 따른 자격 증빙 내용
- 보호자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생년월일, 건강보험료 또는 재산세 부과 내역* 및 지원 유형에 따른 자격 증빙 내용

*사회통합전형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리 기준표)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91조의4, 제97조, 제104조의7, 제106조의3

2. 민감정보 수집 ·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지원자 및 학부모 장애 정도,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국적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확인(해당자에 한함)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리 기준표)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4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경기도교육청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이중지원 확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제공 항목)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신 학교명, 지원 고등학교명, 합격·불합격 여부

(보유기간 및 이용 기간) 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리 기준표)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106조의3

※ 입학원서 서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한 후 최종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사진도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원서와 수험표에 자동으로 인쇄됨

2027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번호			수험번호	※ 추후 면접 시 본교에서 부여함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
	자택 주소	(우편번호)			보호자 휴대전화 ☎
					출신 중학교 ☎
	학 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졸업예정( ) · 졸업(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 )]			
	중학교 주소	(우편번호)			

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유형	
출결(1~3학년)	미인정결석 ( )일, 미인정지각·조퇴·결과 ( )회		

교과성적	학년 / 과목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사회/역사				
	수학				
	과학				
	영어				

담임교사 확인	( )학년 ( )반 담임교사 _____ (서명 또는 날인)

사 진
(3㎝ x 4㎝)
최근 3개월 이내

출신학교장 직인

위 학생은 2027학년도 귀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_____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_____ (서명 또는 날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사진에도 날인**)

입학원서(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성 명	

(※서류 제출 시, 본 접수증을 지참할 것)

2027학년도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

2026년 12월 일

하나고등학교장

접수담당자 확인란

절취선

수 험 표

접수번호	
수험번호	
성 명	

(※면접 시, 본 수험표를 지참할 것)

사 진
(3cm×4cm)
최근 3개월 이내

출신학교장 직인

하나고등학교장

※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 자기소개서 양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하나고등학교
Hana Academy Seoul

202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접수번호	
수험번호	※ 추후 면접 시 본교에서 부여함

지원자 기재 사항

성 명 _____ 성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 락 처 (휴대전화)

확인 서약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 서약합니다. □

2026년 12월 일

지원자 _____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기술하십시오. **※ 자기소개서의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인증시험, 각종 대회 참여 사실, 성적, 수상 실적
-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 출간 사실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실적 및 관련 내용*
  *다만, 특례입학 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 포함 가능(대회 참여·수상실적은 제외)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3. 본문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하며,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이내이어야 합니다.
4. **자기소개서는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2단계 면접 대상자에 한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및 저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간 : 2026.12.10.(목) 17:00~12.14.(월) 10:00(오전10시)]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기간 종료 이후에는 입력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합니다.**
5.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2페이지 중 2페이지>

□ 나의 꿈과 끼, 인성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

· 중학교 재학 중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학습한 경험을 선택하여,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쓰시오. (800자 내외)
· 본교의 핵심역량 중 자신이 더욱 키우고 싶은 역량 하나를 선택하여, 고등학교 진학 후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쓰시오. (300자 내외)
· 리더십·공동체의식·소통·협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검정고시 합격자 등) 최근 3년 이내의 경험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분량은 권장 사항이며, 총 1,500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양식은 출력용 견본입니다.
자기소개서 본문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학교장 확인서

발급 번호	2026 -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유형 (※ 해당 항목에 ☑ 체크)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가구원 수 (　)인		**2순위** 가구원 수 (　)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군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경찰(해양경찰)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방공무원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의 자녀	☐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		

위 학생을 2027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또는 교육지원청)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검정고시)'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서명 또는 인)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유형 : 지원하는 유형에 체크하고 사회다양성전형의 경우 가구원 수 기재 필수

※ 학교장 확인서 작성일은 원서접수월(또는 전월)이어야 함

(예) 2026년 12월 원서접수의 경우, 11월 혹은 12월 이어야 함

[붙임2]

2027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법정대리인) 확인서

접수 번호	2026 -

성 명	학 생		생년 월일	학생						
	보호자			보호자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 지역 ( )년 (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유형 (※ 해당 항목에 ☑ 체크)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가구원 수 ( )인		**2순위** 가구원 수 ( )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군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경찰(해양경찰)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방공무원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의 자녀	☐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		

위의 해당 지원 유형 및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학 생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 번호 : 고등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접수 번호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검정고시)' 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유형 : 지원하는 유형에 체크하고 사회다양성전형의 경우 가구원 수 기재 필수

[붙임3]

2027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발급 번호	2026 -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2월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증빙 서류										

추천 사유(※ 학교장 추천 요건만 기재할 것, 3쪽 참조)

2026년　　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하나고등학교장 귀하

※ 발급 번호: 중학교별(또는 교육지원청)로 추천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중학교에서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 에 따라 대상자 유형, 증빙 서류, 추천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 한해 추천서 발급
(지원하는 고등학교에 '학교장 확인서' 와 '학교장 추천서' 및 '증빙 서류' 모두 제출)

[붙임4]

고등학교 특례 입학 대상자 확인서

(중학교용)

소속: 3학년 반 번

성명:

상기 학생은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자격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구 분	대 상		해당여부 (○표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유형2)	가목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
	나목	정부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자녀	( )
	다목	외국인 학생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유형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한 학생		( )

2026. . .

( ) 중 학 교 장 직인

[붙임5]

고등학교 특례 입학 대상자 확인서

(교육지원청용)

생 년 월 일:

성 명:

상기 학생은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자격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구 분	대 상	해당여부 (○표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유형1)	외국 또는 군사분계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유형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학생	( )

2026. . .

( )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